Young Engineers Honor Society (YEHS) 정관

2010. 12. 28. 일부개정	2017. 12. 22. 전면개정
2012. 12. 27. 일부개정	2018. 12. 22. 일부개정
2015. 12. 23. 일부개정	
2016. 12. 22. 일부개정	

목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회 원	1
제3장	임 원	2
제4장	총 회	3
제5장	중 앙 운 영 위 원 회	5
제6장	운 영 위 원 회	5
제7장	활 동	8
제8장	재정 · 회계	8
제9장	보 칙	9
부칙		9

2017. 12. 22.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 ① 본 모임의 정식 명칭은 'Young Engineers Honor Society' (이하 'YEHS')으로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한국공학한림원 차세대공학리더'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제 2 조 【모임의 목적】

- ① YEHS는 회원들에게 차세대공학리더로 성장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과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학적 배경을 가진 리더를 양성한다. <개정 2017. 12. 22.>
- ② YEHS는 전국 공학도들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국적인 공대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 ③ YEHS는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④ YEHS의 모든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 [문구수정 2017. 12. 22.]

- ① YEHS는 YEHS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정회원은 시니어 회원, 주니어 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2. 22.>
- ④ 준회원은 주니어 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2. 22.>
- ⑤ <삭제 2017. 12. 22.>
- ⑥ <삭제 2017. 12. 22.>

제 4 조 【회원의 자격】

- ① 대한민국 각 대학의 총장 또는 공과대학 학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공학한림원의 NAEK포럼 및 그에 준하는 형식의 행사에 참석한 자를 회원으로 선발한다. 위의 과정으로 선발된 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② 준회원 중 정회원 평가 관련 세부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이 성립된 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③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이 성립된 자는 시니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1. 학사학위 취득 이후 취직 경력이 있는 정회원
 - 2. 박사학위 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회원
 - 3.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4학기 이상을 완료한 정회원

<개정 2018. 12. 22.>

[본조신설 2017. 12. 22.]



제 5 조 【회원의 권한】

- ① 회원은 본 모임에서 기획한 모든 회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본 모임의 활동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 6 조 【회원의 제명】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 4. YEHS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 5. YEHS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 6.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따르지 않은 회원

[본조신설 2017, 12, 22.]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 원】

YEHS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회 장 1 인 부회장 6 인

<개정 2017. 12. 22.>

제 8 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의 후보는 본 모임의 정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2.>
- ② 부회장의 후보는 본 모임의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2.>
- ③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후보에 대한 임명 승인에 의한다. <개정 2017. 12. 22.>

제 9 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 ②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총회 종료일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단,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2.>
- ③ <삭제 2017. 12. 22.>
- ④ <삭제 2017. 12. 22.>

제 10 조 【임원의 업무 및 권한】

① 본 모임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본 모임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그 업무를 주관
- 3.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
- 4.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회를 소집
- 5. 그 밖의 회장의 직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② 본 모임의 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각 부서의 장이 되어 그 업무를 주관
 - 2.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그 업무를 수행
 - 3.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의 추천 <개정 2018. 12. 22.>
 - 4. 부서별 업무 회의를 소집
 - 5. 그 밖의 부회장의 직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12, 22.]

제 11 조 【임원의 궐위 또는 부재】

- ① 회장의 궐위 또는 부재 시 부회장 중 1인을 운영위원회에서 지목하여 다음 총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회장의 궐위 또는 부재 시 운영위원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임명하여 다음 총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 12 조 <삭제 2017. 12. 22.>

제 13 조 <삭제 2017. 12. 22.>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총회의 지위】

- ① 총회는 본 모임의 제반 활동에 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 ② 총회는 본 모임의 모든 결정사항에 있어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 15 조 【총회의 의장】

의장은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총회를 대표한다.

-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 ② 회장의 궐위 또는 부재 시 부회장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목한 1인이 의장을 맡는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 16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② 정기총회는 매 연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2.>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소집된다.
 - 1. 회장의 소집 요구
 - 2. 운영위원회의 1/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한 소집 요구
 - 3. 전체 정회원 1/20 이상의 연서를 통한 소집 요구
- <개정 2017. 12. 22.>
- ④ 총회가 소집될 시, 본 모임의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개회 7일 전까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17. 12. 22.]
- <조문이동 2017. 12. 22.>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7, 12, 22.]

- 1.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2.>
- 2. 임원의 임명 및 해임 결정에 관한 사항 [문구수정 2017. 12. 22.]
- 3. <삭제 2017. 12. 22.>
- 4.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문구수정 2017. 12. 22.]
- 5.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2.>
- 6. 사업계획의 승인
- 7. 기타 중요한 사항

<조문이동 2017. 12. 22.>

제 18 조 【총회의 정족수】 [문구수정 2017. 12. 22.]

- ① 총회는 지난 정기총회의 다음날부터 당 총회까지 YEHS의 회원활동에 참여한 정회원 1/5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단, 출석 정회원이 20인 미만일 경우 개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2.> [문구수정 2017. 12. 22.]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및 승인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은 적절한 토의과정을 거쳐 재표결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문구수정 2017. 12. 22.]
- ③ 개회 선포 이후에 들어온 회원은 참관인으로 규정하고,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2.>

제 19 조 【총회결의의 제척사유】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문구수정 2017. 12. 22.]
 - 1.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본인에 해당될 경우 <개정 2017. 12. 22.>
 - 2. 임원의 임명 및 해임 결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본인에 해당될 경우 <개정 2017. 12. 22.>
 - 3. 기타 중요한 사항에 있어 본인에 해당될 경우 <개정 2017. 12. 22.>
- ② 본조 제1항의 제3호에 있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해당하는 회원의 의결 참여가 허가된다. [문 구수정 2017. 12. 22.]

제 20 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남기도록 하며,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인과 출석 정회원 3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고, 그 내용을 회원에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17. 12. 22.]

제 5 장 중 앙 운 영 위 원 회

제 21 조 【중앙운영위원회의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 모임의 상설 운영기구이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 22 조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본 모임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 23 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 모임의 회장이 한다.
- ② 회장의 궐위 또는 부재 시 부회장 중 운영위원회에서 지목한 1인이 의장을 맡는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 24 조 【중앙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 1. 본 모임의 재정 · 회계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구성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3. 운영위원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검토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4.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임면 및 직책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2.>
- 5.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본조신설 2017. 12. 22.]

제 25 조 【중앙운영위원회결의의 제척사유】

-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문구수정 2018. 12. 22.]
 - 1. 기타 제반 사항에 있어 본인에 해당될 경우
- ② 본조 1항의 1호에 있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해당하는 위원의 의결 참여가 허가된다. [문구수 정 2018. 12. 22.]

[본조신설 2017, 12, 22.]



제 6 장 운 영 위 원 회

제 26 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모임의 운영기구이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 27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를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운영위원회는 본 모임의 임원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2. 분야 별 업무를 담당하여 총괄하는 6개의 관리 부서를 둔다.
 - 3. 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부회장이 담당하여 부서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각부서를 대표한다.

<개정 2017. 12. 22.>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각 호를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1. 운영위원은 본 모임에 회원으로 속해야 한다.
 - 2. 운영위원은 관리 부서 중 하나에 속한다.
 - 3. 각 부서의 속한 운영위원 중 최대 2인은 속한 부서의 부장으로 임명한다.
 - 4. 각 부서의 속한 운영위원 중 필요한 인원은 속한 부서의 차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2.>

제 28 조 【운영위원회의 의장】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 ①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 모임의 회장이 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의 상황이 발생 시 부회장 중 운영위원회에서 지목한 1인이 의장을 대행한다.
 - 1. 본 모임의 회장에 대한 해임안의 논의될 경우.
 - 2. 의장이 궐위 또는 부재일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2.]

제 29 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문구수정 2017. 12. 22.]

-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소집된다.
 - 1. 의장의 소집 요구
 -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

<개정 2017. 12. 22.>

<조문이동 2017. 12. 22.>

제 30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문구수정 2017. 12. 2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 1. 본 모임의 관리 부서별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 2. 정관 개정안의 발의 및 총회로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3. 세부 규정의 제정/개정안의 발의 및 총회로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해임안 발의 및 총회로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7. 회원활동의 회비 책정과 수납 방법에 관한 사항
- 8. 회원활동 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때에 대한 해명과 초과분의 환급에 관한 사항
- 9.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본 모임 운영의 제반 사항

<개정 2017. 12. 22.>

<조문이동 2017. 12. 22.>

제 31 조 【운영위원회의 정족수】 [문구수정 2017. 12. 22.]

- ① 운영위원회는 전체 운영위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2.>

제 32 조 【운영위원회결의의 제척사유】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문구수정 2018. 12. 22.]
 - 1. 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본인에 해당될 경우 <개정 2017. 12. 22.>
 - 2. 임원의 해임안 발의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본인에 해당될 경우 <개정 2017. 12. 22.>
 - 3. 기타 제반 사항에 있어 본인에 해당될 경우 <개정 2017. 12. 22.>
- ② 본조 1항의 3호에 있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해당하는 위원의 의결 참여가 허가된다. [문구수 정 2018. 12. 22.]

제 33 조 【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운영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은 대외비를 제거하여 반드시 남기도록 하며,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고, 그 내용을 운영위원에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17. 12. 22.]

제 34 조 【상임위원회】

- ①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며 YEHS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둔다.
- ② 상임위원은 1년 이상 회장 및 부회장직을 역임했거나 운영진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공적이 있는 자를 대상한다. 상임위원회가 공로를 인정하여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상임위원직을 맡을 수 있다. <조문이동 2017. 12. 22.>



제 35 조 <삭제 2017. 12. 22.>

제 36 조 <삭제 2017. 12. 22.>

제 7 장 회 원 활 동

제 37 조 【회원활동의 정의】

본 모임의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기획 행사를 회원활동이라 한다. 본 모임에서 기획된 모든 회원활동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2.>

- 1. 사회 공헌 활동
- 2. 학술 교류 활동
- 3. 회원 교류 활동

[본조신설 2017. 12. 22.]

제 38 조 【회원활동의 회비】

- ① 회원활동의 회비는 회원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에 참여한 회원이 분담하는 운영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2.>
- ② 회원활동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비의 액수, 납부기한, 납부방식이 결정된다. <개정 2017. 12. 22.>
- ③ 활동에 참가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개정 2017. 12. 22.>
- ④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회비의 액수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때, 책정 기준에 대한 해명과 초과분에 대한 환급을 운영위원회로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개정 2017. 12. 22.>

<조문이동 2017. 12. 22.>

제 8 장 재 정 회 계

제 39 조 【재정】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YEHS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 1. 각 회원의 행사참가회비
 - 2. 지원금 및 찬조금
 - 3.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수익 및 손해
- 4. 기타 일반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산 [문구수정 2017. 12. 22.]
- ② 본 모임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재산으로 충당한다. [문구수정 2017. 12. 22.]

제 40 조 [제7장으로 이동 2017. 12. 22.]



제 41 조 【재정의 관리】

- ① 총무직은 회장이 담당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른 임원이 해당직을 대행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7. 12. 22.]
- ② 본 모임의 재산의 관리 및 회계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총무직이 담당한다. <개정 2017. 12. 22.> [문구수정 2017. 12. 22.]
- ③ 재정 관리를 위한 계좌는 회장의 명의로 개설하여, 총무직이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2.>

제 42 조 【회계】

- ① 총무직은 재산상태 및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본 모임의 회계연도는 당해 정기총회의 다음날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문구수정 2017, 12, 22.]
- ③ 해당 회계연도에 잉여분이 발생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7. 12. 22.>

제 9 장 보칙

제 43 조 [부칙으로 이동 2017. 12. 22.]

제 44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구수정 2017. 12. 22.]

제 45 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
- 2. 회원총수 및 출석회원 명부
- 3. 회의 내용
- 4.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개정 2018. 12. 22.>

제 46 조 【운영세칙】

본 모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구수정 2017. 12. 22.]

부 칙

제 1 조 【발효 및 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어, 총회의 의장이 공포한 시점부터 발효, 시행된다. <개정 2017. 12. 22.> <조문이동 2017. 12. 22.>



Young Engineers Honor Society(YEHS) 정회원 평가 관련 세부 규정

2017. 12. 22. 제정 2018. 12. 22. 일부개정

목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정 회 원 자 격	1
부친		2

2017. 12. 22.



" 정회원 평가 관련 세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세부 규정은 정회원 평가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정회원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원 칙】

정회원 평가는 본 모임의 회원 자격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 2 장 정회원 자격

제 3 조 【분기별 조건】

- ① 2019년 1월 이전의 CEO포럼 및 NAEK포럼 초청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요구된 분기에 성립하여야 한다.
 - 1. YEHS 세미나 1회 참여
 - 2. YEHS 공식 대외 행사 1회 참여
- ② 2019년 1월 이후의 NAEK포럼 초청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요구된 분기에 성립하여야 한다.
 - 1. 학술 교류 활동 1회 참여
 - 2. 사회 공헌 활동 1회 참여

<개정 2018. 12. 22.>

제 4 조 【정회원의 자격】

- ① 2009년 9월 이전의 CEO포럼 초청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 1. 정회원 평가는 본 모임에 가입한 날로부터 2년간 6개월의 분기로 총 4회 이루어진다.
 - 2. 4개의 분기 중 제3조의 분기별 조건을 2회 연속 충족 시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 ② 2009년 9월 이후의 CEO포럼 및 NAEK포럼 초청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 1. 정회원 평가는 가입 일에 가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간 6개월의 분기로 총 3회 이루어진다.
 - 2. 3개의 분기 중 제3조의 분기별 조건을 2회 충족 시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제 5 조 【정회원 평가】

- ① 정회원 평가는 매년 3월, 9월, 12월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 ② 정회원 재평가는 정회원 평가가 진행되는 기간 안에 정회원 자격을 얻지 못한 회원이 재평가를 신청하였을 때 다음 각 호를 따라 시행한다.



- 1. 정회원 재평가는 재평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6개월의 분기로 총 2회 이루어진다.
- 2. 정회원 평가에서 분기별 조건을 1회 이상 만족했을 경우, 2개의 재평가 분기 중 제3조의 분기별 조건을 1회 충족 시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 3. 정회원 평가에서 분기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2개의 재평가 분기 중 제3조의 분기별 조건을 2회 충족 시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 4. 재평가는 총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정회원 평가 유예】

- ① 제4조의 정회원 평가 분기 내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활동이 불가한 회원은 정회원 평가 분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1. 군 복무
 - 2. 교환 학생
 - 3. 어학 연수
 - 4.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 사유
- ② 정회원 평가 유예 기간은 본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기간 이하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2.>

부 칙

제 1 조 【발효 및 시행】

이 세부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되어, 총회의 의장이 공포한 시점부터 발효, 시행된다.

